

보험료

1. 65 세 이상인 분 (제 1 호 피보험자) 의 보험료

65 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3 년마다 각 구시정촌이 정하는 기본액에 소득 단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그 금액은 시구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개호보험료의 표준적인 단계 설정은 다음 페이지와 같습니다만, 본인의 보험료액에 대해서는 거주지 구시정촌의 개호보험담당과로 문의해 주십시오.

【보험료의 납부방법】

개호보험료의 납부방법에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징수되는「특별징수」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보통징수」가 있습니다. 특별징수는 노령퇴직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연액 18 만엔 이상 지급하고 있는 분이 대상이며, 연금 정기지급(연 6 회) 시에 보험료가 차감됩니다. 보통징수의 지급 시기와 횟수는 구시정촌에 따라 다릅니다.

2. 40 ~ 64 세인 분 (제 2 호 피보험자) 의 보험료

40 ~ 64 세인 분의 보험료는 별도로 책정되어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로서 징수됩니다. 보험료액 등은 의료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개호보험은 개호나 지원을 해야 하는 고령자 등을 상호부조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에게는 서비스 이용 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① 1 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지급방법의 변경**
자기부담분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용 전액을 일단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후일, 신청에 따라 보험급부 분이 환급됩니다.
- ② 1 년 6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보험급부의 일시정지**
보험급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부비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③ 2 년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급부액의 감액**
보험료는 2 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시효가 되는데, 서비스 이용 시에 시효가 된 미납 보험료가 있으면, 일정 기간 본래 10% 또는 20%의 이용자 부담인 분은 30%(30%의 이용자 부담인 분은 40%)가 되고, 고액개호서비스비(※) 및 특정입소자개호서비스비(※) 등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11 페이지 참조).

